

# 단체 헌혈 안내

대한적십자사 광주·전남혈액원

## 신분확인

-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사원증 등)
- 고교생 신분확인 :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, 사진대장 또는 명렬표
- 신분증이 없어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없음

## 헌혈 전 몸상태

- 저혈색소, 일시적 저혈압 및 고혈압, 피로, 수면부족, 숙취, 발열, 공복, 음주 여부 확인
- 헌혈 당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
- 감기 : 증상 소실 후 가능, 약 복용시는 헌혈 전 상담 실시
- 독감 등 열성질환인 경우 완치 1개월 후 가능

## 약 복용

- 가능 : 수면제, 제산제, 글루코사민, 인사돌, 비타민, 소화제, 미네랄 등
- 당일 보류 : 두통약, 소염제, 구충제(예방목적) 등
- 3일 보류 : 아스피린, 감기 치료 목적의 항생제(경구 약복용인 경우) 등
- 1주일 보류 : 항생제, 구충제(치료목적), 보톡스, 항진균제 등
- 아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헌혈 전 반드시 상담 실시  
: 여드름치료제, 건선치료제, 탈모치료제, 전립선비대증 치료제
- 기타 위에 설명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

## 시 술

- 내시경(위, 대장) : 4주 보류
- 귀 뚫음 : 일회용을 사용한 경우 4주 보류, 일회용이 아닌 경우 6개월 보류
- 침, 부항과 동시에 사혈 한 경우 : 일회용인 경우 3일 보류, 일회용이 아닌 경우 6개월 보류
- 문신(반영구문신 포함) : 의료기관 시술시 4주 보류, 비의료기관 시술시 6개월 보류

## 예방접종

예방접종 종류	보류기간
B형간염 면역글로불린,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의 예방접종,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	1년
수두, 상처 후 파상풍, 인플루엔자 생백신(비강 흡입), BCG접종, MMR(홍역, 유행성 이하선염, 풍진의 혼합백신), 대상포진, 일본뇌염(생백신)	4주
B형간염, 황열, 경구용 소아마비, 경구용 장티프스	2주
코로나-19	1주
콜레라, 디프테리아, 인플루엔자, A형간염, 주사용 장티프스, 주사용 소아마비, 파상풍, 백일해, 일본뇌염(사백신), 유행성 출혈열, 탄저병, 공수병, 폐렴구균, 자궁경부암 백신(가다실, 서바릭스), 뇌수막염(수막구균 포함)	24시간

##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 여행

- 말라리아 지역
  - 경기도 : 파주시, 연천군
  - 인천 : 강화군
  - 북한 : 백두산 제외 전 지역
  - 강원 : 철원군
- 연중 1일 이상 여행, 연수 등으로 숙박한 경우  
: 1년이 경과해야 전혈헌혈이 가능 [숙박하지 않은 경우는 헌혈가능]

## 해외여행 여부

- 최근 4주 이내 해외여행 : 4주 보류
- 해외여행 지역에 따라 헌혈보류 사유 있으므로 헌혈 전 상담 필히 실시
- 말라리아 : 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  
일부지역 등 동남아시아와 타 대륙(아프리카, 남아메리카)
- 변종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인간광우병) : 영국 및 유럽 전역 등

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헌혈 전 문진시  
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# RhD(-) 긴급헌혈 참여 안내

- RhD(-)혈액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「RhD(-) 혈액수급시스템」 운영
- 고객지원팀에서 RhD(-)헌혈참여 동의자에게 문자 및 유선연락하여 긴급 헌혈요청
- RhD(-)헌혈참여 동의자에게 헌혈 참여 일시,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헌혈의집 안내
- 등록 방법 :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(전화 1600-3705),  
홈페이지([www.bloodinfo.net](http://www.bloodinfo.net))이용/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로그인후 마이페이지->  
개인정보수정 페이지 접속, 긴급헌혈 참여 동의 및 긴급 헌혈안내 수신동의 체크,  
수정버튼 클릭

## 헌혈 자원봉사인정 안내

### 자원봉사 인정 기준

- 시행일: 2010. 7. 1일 이후 헌혈부터 인정
- 인정시간: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
- 연간 인정 횟수: 연간 3회
- 인정기준: 헌혈자 본인만 인정

### 자원봉사 인증 기관 및 인증방법

- 인증기관: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([www.vms.or.kr](http://www.vms.or.kr))
- 인증방법: 회원가입 - 로그인 - 나의 VMS -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 
헌혈실적 조회 및 헌혈실적 등록 - “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인증서” 출력